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10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이언주 · 민병덕 · 이재관

김준혁 • 이개호 • 이상식

정진욱 • 박민규 • 김동아

김병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와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각종 재난 상황 시 투입되어 대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군의 기본임부는 안보위기로부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이 동원되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채해병 순직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진정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동원된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군이 재난위기 상황의 대처를 위하여 동원되어야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함.

이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군인

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지원 요청에는 따라서는 아니 된 다.

- 1.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
-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 3.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 4. 개인(민간인)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가시책에 부합하거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5. 국민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생 략)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②
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군은 다음</u>
	<u>각 호의 사업의 지원 요청에는</u>
	<u>따라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1.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
	<u>업</u>
<u><신 설></u>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
	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u><신 설></u>	3.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u><신 설></u>	4. 개인(민간인)이 주관하는 사
	업으로 국가시책에 부합하거
	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u><신 설></u>	5. 국민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
	를 위한 사업